

定 款

第 1 章 總 則

제1조 (상호)

본 회사는 한화투자증권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라 칭한다. 영문으로는 HANWHA INVESTMENT & SECURITIES CO., LTD(약칭 H.I.S.C)로 표기한다.

제2조 (목적)

- ① 회사는 다음의 금융투자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투자매매업
 2. 투자중개업
 3. 집합투자업
 4. 투자자문업
 5. 투자일임업
 6. 신탁업
 7. 전기 각 호 외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영위할 수 있는 업무
- ② 회사는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금융투자업자가 영위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제반 겸영업무를 해당 업무 관련 감독당국의 인가, 허가, 승인, 등록, 신고 등을 득하여 수행한다.
- ③ 회사는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금융투자업자가 영위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제반 부수업무를 해당 업무 관련 감독당국의 인가, 허가, 승인, 등록, 신고 등을 득하여 수행한다.

- ④ 회사는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열거된 업무 이외에도 관련 법령에 따라 금융투자업자가 영위할 수 있는 업무를 모두 영위할 수 있다.
- ⑤ 회사는 제1항, 제2항, 제3항 및 제4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 등 감독당국의 인가, 허가, 승인, 등록, 신고 등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해당 인가 등을 득하여 해당 업무를 영위한다.

제3조 (본점의 소재지 및 지점 등의 설치)

- ① 회사는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
- ② 회사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국내외에 지점, 현지법인, 사무소 및 출장소를 둘 수 있다.

제4조 (공고)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hanwhawm.com>)에 게재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경향신문에 게재한다.

第 2 章 株 式

제5조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육억육천만주로 한다.

제6조 (일주의 금액)

일주의 금액은 금 오천원으로 한다.

제7조 (주식의 종류)

- ①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종류는 기명식 보통주식과 기명식 종류주식으로 한다.
- ② 회사가 발행하는 종류주식은 이익배당에 관한 우선주식, 의결권 배제

또는 제한에 관한 주식, 상환주식, 전환주식 및 이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혼합한 주식으로 한다.

제8조 (이익배당우선주식)

- ①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참가적 이익배당우선주식 또는 비참가적 이익배당우선주식, 누적적 이익배당우선주식 또는 비누적적 이익배당우선주식을 독립적으로 또는 여러 형태로 조합하여 발행할 수 있다.
- ② 이익배당우선주식에 대하여는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배당률, 이자율, 시장 상황, 기타 이익배당우선주식의 발행에 관련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이익배당우선주식 발행 시에 이사회가 정한 우선배당률에 따른 금액을 현금 또는 현물로 우선배당을 한다.
- ③ (삭 제)
- ④ (삭 제)
- ⑤ 회사가 유상증자 및 주식배당 또는 무상증자를 실시하는 경우 이익배당우선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유상증자 및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에 따라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 또는 그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할 수 있으며,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한다.
- ⑥ 회사는 이익배당우선주식의 발행 시 이사회 결의로 존속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동 기간의 만료와 동시에 보통주식으로 전환한다. 그러나 위 기간 중 소정의 배당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정의 배당을 완료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이사회 결의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 제10조의4 제1항의 규정의 준용 여부는 이익배당우선주식 발행 시 이

사회 결의로 정한다.

제8조의2 (의결권배제주식)

- ①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관련 법령상 허용되는 한도까지 의결권이 배제되는 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 ② 이익배당우선주식을 제1항의 의결권이 배제되는 주식으로 발행하는 경우, 이사회는 동 이익배당우선주식에 대하여 소정의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경우 그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 시까지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정할 수 있다.

제8조의3 (전환주식)

- ①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전환 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 ②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총 발행가액은 전환 전의 주식의 총 발행가액으로 한다.
- ③ 전환주식은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존속기간 만료와 동시에 전환되는 전환주식, 회사의 선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주식, 주주의 청구에 따라 전환하는 전환주식 및 이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혼합한 전환주식으로 발행할 수 있다.
- ④ 전환주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행한 경우 이 회사의 선택에 따라 전환할 수 있는 것으로 발행할 수 있다.
 1. 회사의 재무적 상황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회사의 경영상 필요, 기타 전환주식의 발행에 관련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발행 시 이사회가 정한 사유
- ⑤ 전환주식은 전환주식의 발행에 관련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발행 시

이사회가 정한 사유에 의거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발행할 수 있다.

- ⑥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은 전환주식 발행 시 이사회 결의로 정한 보통주식 또는 종류주식으로 한다.
- ⑦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수는 전환주식 발행 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 ⑧ 전환주식의 전환 또는 전환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은 30년 이내의 범위에서 전환주식 발행 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 ⑨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 제10조의4 제1항의 규정의 준용 여부는 전환주식 발행 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제8조의4 (상환주식)

- ①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주주의 상환청구 또는 회사의 선택에 따라 상환할 수 있는 상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 ② 상환주식의 상환가액은 발행가액 및 이에 가산금액을 더한 금액(가산금액이 있는 경우에 한함)으로 하며, 가산금액은 배당률, 이자율, 시장상황, 기타 상환주식의 발행에 관련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발행 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다만, 상환가액을 조정할 수 있는 상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발행 시 이사회에서 상환가액을 조정할 수 있다는 내용, 조정사유, 조정의 기준일 및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 ③ 상환주식의 상환기간은 배당률, 이자율, 시장상황, 기타 상환주식의 발행에 관련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30년 이내의 범위에서 발행 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 ④ 회사의 선택으로 상환하는 경우 상환주식을 일시에 또는 분할하여 상환할 수 있다. 단, 분할상환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추첨 또는 안분비례의 방법에 의하여 상환할 주식을 정할 수 있으며, 안분비례 시 발생하는 단주는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다.
- ⑤ 회사의 선택으로 상환하는 경우 회사는 상환대상인 주식의 취득일 2주일 전에 그 사실을 그 주식의 주주 및 주주명부에 기재된 권리자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 ⑥ 주주의 상환청구로 상환하는 경우 주주는 상환주식 전부를 일시에 또는 분할하여 상환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주주는 2주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상환할 뜻과 상환대상 주식을 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회사는 상환청구 당시에 배당가능이익으로 상환주식 전부를 일시에 상환하기 충분하지 않을 경우 회사가 추첨 또는 안분비례의 방법에 의하여 상환할 주식을 정할 수 있으며 안분비례 시 발생하는 단주는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다.
- ⑦ 회사는 제8조의3에 의한 전환주식을 회사의 선택에 의하여 상환할 수 있는 상환주식으로 발행하는 경우 주주의 전환권 행사와 회사의 선택에 의한 상환 사이에 우선순위를 주식 발행 시 이사회 결의로 정할 수 있다.
- ⑧ 회사는 주식의 취득의 대가로 현금 외의 유가증권(다른 종류의 주식은 제외한다)이나 그 밖의 자산을 교부할 수 있다.
- ⑨ 상환주식에 대하여는 유상증자, 주식배당 또는 무상증자를 실시하는 경우에도 신주를 배정 또는 배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상환주식 발행 시 이사회 결의로 정할 수 있다.

제9조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회사는 주권 및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 계좌부에 주식 및 신주인수권 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

제10조 (주식발행 및 배정)

① 회사가 이사회 결의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식에 의한다.

1.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2.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1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② 제1항 제3호의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여야 한다.

1.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2. 관계 법령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까지 포함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에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4.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예측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 ③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416조 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 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자본시장법 제165조의9에 따라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 및 거래소에 공시함으로써 그 통지 및 공고를 갈음할 수 있다.
 - ④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 ⑤ 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그 기일까지 신주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그 가액을 납입하지 아니한 주식에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발행가액의 적정성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 ⑥ 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면서 발행하는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 ⑦ 회사는 제1항 제1호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주주에게 신주인수권 증서를 발행해야 한다.

제10조의2 (삭 제)

제10조의3 (주식매수선택권)

- ① 회사는 임·직원(관계법령이 정하는 관계회사의 임·직원을 포함한다. 이

하 같다)에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 범위 내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부여할 수 있다. 다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범위 내에서 이사회 결의로 회사의 이사를 제외한 자에 대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그 부여일 이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해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경영성과목표 또는 시장지수 등에 연동하는 성과연동형으로 할 수 있다.

- ②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는 회사의 설립·경영·해외영업 또는 기술 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자로 한다.
- ③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교부할 주식(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주식을 말한다)은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한다.
- ④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임·직원의 수는 재직하는 임·직원의 100분의 90을 초과할 수 없고, 임원 또는 직원 1인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 ⑤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주식의 1주당 행사가격은 다음 각 호의 가격 이상이어야 한다.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그 행사가격을 조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새로이 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가격 중 높은 금액
 - 가.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당해 주식의 실질가액
 - 나. 당해 주식의 권면액
 2. 자기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

- ⑥ 주식매수선택권은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행사할 수 있다.
- ⑦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자는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자가 제1항의 결의일부터 2년 내 사망하거나 정년 또는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행사기간 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⑧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0조의4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⑨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이 임의로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초래하게 한 경우
 3. 회사의 파산 또는 해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4.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0조의4 (신주의 배당기산일)

- ①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영업연도의 직전 영업연도 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 ② 회사는 신주 발행 시 이사회 결의로 제1항을 준용하지 않는 것으로 정할 수 있다.

제11조 (명의개서대리인)

- ① 회사는 주식의 명의개서대리인을 둔다.
- ② 명의개서대리인 및 그 사무취급장소와 대행업무의 범위는 이사회 결의로 정하고 이를 공고한다.
- ③ 회사는 주주명부 또는 그 부분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전자등록, 주주명부의 관리,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하게 한다.
- ④ 제3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명의개서대리인의 증권명의개서대행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12조 (삭제)

제13조 (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 ① 회사는 매년 1월 1일부터 1월 15일까지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한다.
- ② 회사는 매년 12월 31일 최종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 ③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 결의로 3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이사회 결의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으며,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정지와 기준일의 지정을 함께 할 수 있다. 회사는 이를 2주간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第 3 章 社 債

제13조의 2 (사채의 발행)

① 회사는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에게 사채의 금액 및 종류를 정하여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 사채를 발행할 것을 위임할 수 있다.

제13조의3(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이 회사는 사채권 및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

제14조 (전환사채의 발행 및 배정)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사채의 액면총액이 일조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0조 제1항 제1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사채를 배정하기 위하여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사채의 액면총액이 일조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10조 제1항 제1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사채를 배정하는 방식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② 제1항 제2호의 방식으로 사채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사채를 배정하여야 한다.

1.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사채를 배정하는 방식

2.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사채가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사채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예측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 ③ 제1항의 전환사채에 있어서 이사회는 그 일부에 대하여만 전환권을 부여하는 조건으로 이를 발행할 수 있다.
- ④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 또는 이 정관에서 정하는 종류주식으로 사채 발행 시 이사회 결의로 정할 수 있고, 그 전환가액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 시 이사회가 정한다.
- ⑤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 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사채 발행 시 이사회 결의로써 전환청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⑥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과 전환사채에 대한 이자의 지급에 관하여 제10조의4 제1항의 규정의 준용 여부는 사채 발행 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제15조 (신주인수권부 사채의 발행 및 배정)

-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사채의 액면총액이 일조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0조 제1항 제1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이 회사

- 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사채를 배정하기 위하여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사채의 액면총액이 일조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10조 제1항 제1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사채를 배정하는 방식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② 제1항 제2호의 방식으로 사채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가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사채를 배정하여야 한다.
 1.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사채를 배정하는 방식
 2.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사채가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사채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예측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 ③ 신주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사채의 액면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채 발행 시 이사회가 정한다.
 - ④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 또는 이 정관에서 정하는 종류주식으로 사채 발행 시 이사회가 결의로 정할 수 있고, 그 발행가액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격으로 사채 발행 시 이사회가 정한다.
 - ⑤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그 상

환기일의 직전 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사채 발행 시 이사회 결의로써 신주인수권의 행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⑥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 제10조의4 제1항의 규정의 준용 여부는 사채 발행 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제16조 (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

제11조의 규정은 사채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

第 4 章 株 主 總 會

제17조 (소집시기)

- ① 회사의 주주총회는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로 한다.
- ② 정기주주총회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제18조 (소집권자)

- ① 주주총회의 소집은 법령에 따라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 결의에 따라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 ② 대표이사의 유고 시에는 제35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9조 (소집통지 및 공고)

- ① 주주총회를 소집함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 이사 또는 감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후보자에 관한 사항을 총회일 2주간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 ② 의결권이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2주간 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한다는 뜻과 회의의 목적사항을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경향신문과 매일경제신문에 2회

이상 공고하거나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가 운용하는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고함으로써 제1항의 소집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 ③ 회사가 제1항 및 2항에 따라 주주총회의 소집통지 또는 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법 등에서 규정하는 경영참고사항을 통지 또는 공고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회사의 경영참고사항을 회사의 본·지점, 명의개서대행회사,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에 비치하는 경우에는 소집통지 또는 공고에 갈음할 수 있다.

제20조 (소집지)

주주총회는 본점 소재지에서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이의 인접지역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제21조 (의장)

- 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로 한다.
- ② 대표이사의 유고 시에는 등기이사 중에서 부사장, 전무, 상무, 상근감사위원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 때 부사장, 전무, 상무, 상근감사위원의 수가 각각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지명한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2조 (의장의 질서유지권)

- 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발언, 행동을 하는 등 현저히 질서를 문란케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 ② 주주총회의 의장은 의사진행의 원활화를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에는 주주의 발언시간 및 회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제23조 (주주의 의결권)

주주의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

제24조 (상호주에 대한 의결권제한)

회사,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제25조 (의결권의 불통일행사)

- ① 2 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주주가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회일의 3일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 ② 회사는 주주의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주주가 주식의 신탁을 인수하였거나 기타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6조 (의결권의 대리행사)

- ①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대리인은 주주에 한한다.
- ② 제1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 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 (주주총회의 결의방법)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제28조 (주주총회의 의사록)

주주총회에 있어서 의사의 경과요령과 결과는 의사록에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본점과 지점에 비치하여야 한다.

第 5 章 理 事, 委 員 會, 理 事 會

제29조 (이사의 수)

- ① 회사의 이사는 3명 이상 12명 이하로 하고 사외이사는 3명 이상으로서 이사총수의 과반수로 한다.
- ② 회사의 이사회는 이사 전원을 특정 성(性)의 이사로 구성하지 아니한다.

제30조 (이사의 선임)

- ①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 ② 이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 ③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도 상법 제382조의2에서 규정하는 집중투표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1조 (사외이사 등 후보의 추천)

- ①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이라 한다) 등 관련 법규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사외이사, 대표이사 및 감사위원 후보를 추천한다.
- ② 제1항의 후보 추천 및 자격심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정한다.

제32조 (이사의 임기)

- ① 이사의 임기는 취임 후 2년 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 시까지로 한다.
- ② 이사의 연임 시 임기는 연임 후 2년 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 시까지로 한다.
- ③ 사외이사의 연임 시 임기는 차회 정기주주총회 종결 시까지로 하며,

연속하여 5년을 초과 재임할 수 없다.

제33조 (이사의 보선)

- ① 이사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이 정관 제29조에 정하는 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 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② 보선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전임이사의 잔여임기로 한다.
- ③ 사외이사가 사임, 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관 제29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충족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34조 (대표이사 등의 선임)

- ①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회장, 부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약 간 명을 선임할 수 있으며, 이들 중에서 1인 이상의 대표이사를 선임한다.
- ② 전략기획, 재무관리 및 위험관리 등의 주요업무를 집행하는 주요업무 집행책임자의 임기는 이사회 결의로 정하며, 주요업무집행책임자는 연임할 수 있다.

제35조 (이사의 직무)

- ①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 ② 부사장, 전무, 상무는 대표이사를 보좌하고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의 업무를 분장 집행하며 대표이사 유고 시에는 위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 때 부사장, 전무, 상무의 수가 각각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지명한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6조 (이사의 보고의무)

- ① 이사는 업무의 집행상황을 3월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이사회에 보

고하여야 한다.

- ②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36조의 2 (이사·감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감경)

- ① 회사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사 또는 감사의 상법 제399조에 따른 책임을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 간의 보수액(상여금과 주식 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을 포함한다)의 6배(사외이사의 경우는 3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면제할 수 있다.
- ② 이사 또는 감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와 이사가 상법 제397조(경업금지), 제397조의2(회사기회유용금지) 및 상법 제398조(자기거래금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7조 (이사회 의 구성과 소집)

- ①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경영목표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해산·영업양도 및 합병 등 조직의 중요한 변경에 관한 사항
 5. 내부통제기준 및 위험관리기준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6. 최고경영자의 경영승계 등 지배구조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대주주·임원 등과 회사 간의 이해상충 행위 감독에 관한 사항
 8. 관련 법령 및 이사회 규정 등에서 정하는 사항
- ② 이사회의 의장은 매년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 ③ 이사회가 사외이사가 아닌 자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할 경우 사외

이사를 대표하는 자(이하 “선임사외이사”라 한다)를 선임하여야 한다.

- ④ 이사회 의장 또는 대표이사는 회일 3일전에 각 이사에게 소집통지하고 회의자료를 발송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 ⑤ 의장의 유고 시에는 이사회에서 선임된 임시의장이 의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제38조 (이사회 결의방법)

- ① 이사회 결의는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다만, 상법 제397조의2(회사기회유용금지) 및 제398조(자기거래금지)와 지배구조법 제25조(준법감시인의 임면) 및 제28조(위험관리책임자의 임면)의 준법감시인과 위험관리책임자의 해임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한 이사회 결의는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 한다.
- ② 이사회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③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39조 (이사회 의사록)

- ① 이사회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 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40조 (위원회)

- ① 회사는 의사결정의 효율성 및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사회 내에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둔다.
 1. 임원후보추천위원회
 2. 감사위원회
 3. 위험관리위원회
 4. 보수위원회
 5.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원회
- ② 각 위원회의 구성, 권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관계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 ③ 위원회에 대해서는 제37조, 제38조 및 제3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④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권한을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1. 주주총회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의 제안
 2.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3. 위원회의 설치와 그 위원의 선임 및 해임
 4.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

제41조 (이사의 보수와 퇴직금)

- ①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 ② 이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

第 6 章 監査委員會

제42조 (감사위원회의 구성)

- ① 회사는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위원회를 둔다. 감사위원회는 3명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며, 사외이사가 감사위원회 위원(이하 “감사위원”이라 한다)의 3분의 2이상이어야 한다.
- ② 감사위원 중 1명 이상은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은 지배구조법 제6조 제1항 및 제2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회사의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으로 재임(在任) 중이거나 재임하였던 사람은 지배구조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도 불구하고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이 될 수 있다.
- ③ 감사위원 후보는 제40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다. 이 경우 위원 총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회사는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1명 이상에 대해서는 다른 이사와 분리하여 선임하여야 한다.
- ⑤ 감사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하는 권한은 주주총회에 있다. 감사위원을 선임할 때에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⑥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상법 제368조의4 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과반수로써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
- ⑦ 감사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할 때에는 의결권을 행사할 최대주주, 최

대주주의 특수관계인,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합계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경우 그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⑧ 감사위원회는 그 결의로써 사외이사인 위원 중 1인 이상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한다. 이 경우 수인의 위원이 공동으로 위원회를 대표할 것을 정할 수 있다.

제43조 (감사위원회의 직무)

- ①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회계와 직무를 감사한다.
- ② 감사위원회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소집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권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 ③ 제2항의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위원회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④ 감사위원회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 ⑤ 감사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 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 ⑥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외부감사인을 선정한다.
- ⑦ 감사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6항 외에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

⑧ 감사위원회 결의에 대하여 이사회는 재결의할 수 없다.

⑨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

제44조 (외부감사인의 선임)

회사는 주식회사의등외부감사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회가 선정한 외부감사인을 선임하며 선임 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에 그 사실을 보고하거나 주식회사의등외부감사에관한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제45조 (상근감사위원)

감사위원회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감사담당부서에 대한 원활한 지휘 및 감독을 위하여 상근감사위원(사외이사 아닌 감사위원에 한한다)을 둘 수 있다.

제46조 (감사록)

감사위원회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위원회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第 7 章 計 算

제47조 (사업연도)

회사의 사업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8조 (재무제표의 작성, 비치)

① 회사의 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6주간 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 및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위원회의 감사를 받아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서류와 영업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그 밖에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서류
- ② 회사가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회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각 서류에 연결재무제표를 포함한다.
- ③ 감사위원회는 정기주주총회일의 1주 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④ 대표이사는 제1항 각 호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를 영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와 함께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1주간 전부터 본점에 5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 ⑤ 대표이사는 제1항 각 호의 서류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 없이 대차대조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49조 (이익금의 처분)

회사는 매 사업연도의 처분 전 이익잉여금을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1. 이익준비금
2. 기타의 법정적립금
3. 배당금
4. 임의적립금
5. 기타의 이익잉여금처분액

제50조 (삭 제)

제51조 (이익배당)

- ① 이익의 배당금은 금전과 주식 및 기타의 재산으로 할 수 있다.
- ②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할 때

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그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도 할 수 있다.

- ③ 제1항의 배당은 매 결산기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제52조 (배당금지청구권의 소멸시효)

- ① 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 ② 전항의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배당금은 회사에 귀속한다.

제53조 (준용규정)

본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도 상법 또는 기타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 본 정관은 1962년 5월 2일부터 시행한다
- 본 정관은 1969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 본 정관은 1970년 8월 27일부터 시행한다
- 본 정관은 1971년 1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 본 정관은 1961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 본 정관은 1972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 본 정관은 1973년 1월 8일부터 시행한다
- 본 정관은 1974년 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 본 정관은 1974년 11월 4일부터 시행한다
- 본 정관은 1975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 본 정관은 1975년 1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본 정관은 1976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본 정관은 1977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본 정관은 1978년 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본 정관은 1979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본 정관은 1980년 3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본 정관은 1981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본 정관은 1981년 3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본 정관은 1981년 5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본 정관은 1981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본 정관은 1982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본 정관은 1982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본 정관은 1983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
본 정관은 1983년 5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본 정관은 1984년 5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본 정관은 1984년 10월 4일부터 시행한다
본 정관은 1985년 5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본 정관은 1985년 5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본 정관은 1986년 8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본 정관은 1987년 5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본 정관은 1988년 5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본 정관은 1989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본 정관은 1990년 5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본 정관은 1991년 5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본 정관은 1992년 5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본 정관은 1993년 5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본 정관은 1994년 5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본 정관은 1995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본 정관은 1996년 5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2, 제12조, 제14조 제5항, 제15조 제5항, 제27조, 제28조, 제30조, 제31조, 제34조의 2, 제35조, 제36조, 제39조, 제45조의 개정규정은 199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1조는 1996년 10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본 정관은 1997년 5월 31일부터 시행한다.

2.(우선주식에 대한 경과조치) 회사가 개정상법시행일(1996년 10월 1일) 이전에 발행한 우선주식(보통주식배당율+1% 추가현금배당 우선주식)에 대하여 무상증자에 의하여 우선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새로운 우선주식을 배정한다.

부 칙

본 정관은 1998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정관은 1999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30조 제4항은 1999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정관은 2000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정관은 2001년 6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정관은 2002년 5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정관은 2003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정관은 2004년 5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정관은 2005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정관은 2006년 5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정관은 2008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정관은 2009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정관은 2010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정관은 2011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정관은 2012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 제1항과 제2항 및 제47조는 2014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해당 규정의 효력 발생 전에는 2011년 6월 3일부터 시행된 구 정관의 아래 규정을 적용한다.

구 정관 제13조 (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 ① 회사는 매년 4월 1일부터 4월 15일까지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 변경을 정지한다.
- ② 회사는 매년 3월 31일 최종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구 정관 제47조 (사업연도)

회사의 사업연도는 매년 4월 1일부터 익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본 정관은 2012년 9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정관은 2016년 3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를 적용할 경우, 2016년 3월 18일 이전에 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2012년 9월 4일부터 시행된 구 정관의 아래 규정을 적용한다.

구 정관 제32조(이사의 임기)

- ①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사외이사의 경우 임기는 3년 이내로 하되 연임 시 임기는 1년 이내로 하며 연속하여 5년을 초과하여 재임할 수 없다.
- ② 제1항의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 종료 후 당해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 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부 칙

- 1.(시행일) 이 정관은 2017년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
- 2.(종류주식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전에 발행된 종류주식에 관하여는 이 정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정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른다.
- 3.(신주의 발행에 대한 경과조치) 2016년 12월 31일 이전에 발행된 신주는 제10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각 신주의 발행한도에서 차감하지 않고, 제10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각 신주의 발행한도는 2017년 1월 1일 이후에 발행하는 신주부터 새로이 기산한다.

4.(사채의 발행에 대한 경과조치) 2016년 12월 31일 이전에 발행된 사채는 제14조 제1항 및 제15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각 발행한도에서 차감하지 않고, 제14조 제1항 및 제15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각 발행한도는 2017년 1월 1일 이후에 발행하는 사채부터 새로이 계산한다.

부 칙

이 정관은 주주총회에서 승인한 2019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의3, 제16조, 제43조, 제44조 개정내용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시행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주주총회에서 승인한 2022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